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90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6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하고,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중 월 소득액 기준은 현행과 같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함(안 제5조제1항제2호).
- 65세 이상 민주화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).
-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금액, 지급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정함(안 부칙).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“20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
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)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
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
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
있다. 단,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
에서 제외한다.

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,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
따로 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1년 7월 1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생활지원금 지급 등)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</p> <p>②、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생활지원금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2 <u>00</u> ----- ---</p> <p>②、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생활지원금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1 <u>00</u>----- ---</p> <p><u>제6조(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) ①</u>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5조에</p>

<p><u>제6조</u> (생 략)</p> <p><u>제7조</u> (생 략)</p> <p><u>제8조</u> (생 략)</p>	<p>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금액,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u>제7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 <p>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 <p><u>제9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 <p>부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><u>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금액,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7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 <p>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 <p><u>제9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 <p>부칙 이 조례는 <u>2021년 7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	--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)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,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수 정 안
	<u>〈신 설〉</u>	<p><u>제6조(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)</u></p> <p>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,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u>제6조</u>	(생략)	<u>제7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<u>제7조</u>	(생략)	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
<u>제8조</u>	(생략)	<u>제9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